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62 호 2022. 9. 22.(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2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2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1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273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272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271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1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9. 20.
2. 점용·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사용(토지의 점용)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392-1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5.0㎡
 - 나. 기 간 : 2022. 9. 20. ~ 2026. 3.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롯데건설 대표 하석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 246-10번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2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9. 20.
2. 점용·사용의 목적 : 마을회관 신축을위한 진입로 개설(투수블럭 포장)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339-2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 129m²
 - 2) 영구 : 129m²
 - 나. 기 간
 - 1) 일시 : 2022. 9. 20. ~ 2023. 9. 19.
 - 2) 영구 : 2023. 9. 20. ~ 202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농수산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2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수박골1길 17	호계동 710-9	2022. 09. 22.	건축물 멸실
아름1길 16-6	어물동 31	2022. 09. 22.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271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문화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2022.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나. 기금의 수입·지출 관련 준용 규정 현행화(안 제18조)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 (변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19.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52-241-7332, 팩스번호 : 052-241-733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1. 개정이유

문화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2022.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활동을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나. 기금의 수입·지출 관련 준용 규정 현행화(안 제18조)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 (변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9월중(예정)

바. 입법예고 : 2022. 9월중(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중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7년 12월 31일</u>----- ----- . ----- ----- -----.</p>
<p>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u>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	<p>제18조(준용) -----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p>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1.13.]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법 조항의 이동으로 변동사항 반영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 제103조의3 (안 제2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 제91조의11 (안 제3조, 제4조)

3.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제91조의11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징수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징수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531, 팩스번호 : 052)241-7519
- 3) 전자우편(E-mail) : minyh11@korea.kr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담당관(전화:052-241-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p>「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71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제74조의2제1항제1호”를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의2제1항”을 “영 제91조의11제1항”으로,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74조의2제1항제2호”를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 ----- ----- ----- 제103조의3제1항----- ----- ----- ----- -----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 ④ (생략)</p> <p>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제91조의11제1항제1호----- ----- -----</p>
<p>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p>	<p>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 ----- 영 제91조의11제1항 ----- -----</p>

<p>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u>법 제71조의2제1항</u>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p> <p>1. (생략)</p> <p>2. <u>영 제74조의2제1항제2호</u>에 따른 기관</p> <p>3. 울산광역시장이 <u>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u>에 따라 공고한 기관</p> <p>② (생략)</p>	<p>-----</p> <p>-- <u>법 제103조의3제1항</u>-----</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u> -----</p> <p>3. ----- <u>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u>-----</p> <p>②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가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 제11호 서식)
- (현행) 결손처분
 - (개정)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정리
 -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보류
- 나.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항의 이동으로 위치 변동사항 반영 (안 제21조, 별지 제11호, 별지 제13호 서식)

3.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11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징수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징수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531, 팩스번호 : 052)241-7519

3) 전자우편(E-mail) : minyh11@korea.kr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담당관(전화:052-241-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결손처분)”을“(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징수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부”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6항”을 “영 제91조의11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갑)·(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 정 결 의 서

징 수 관		발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 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 입 연 도		년도 세입	
		결 정 내 용	본세	가산금	계
	항 목	세 액			
		가 산 세			
		결 정 액			
결 정 세 액	금 원(₩)				
납 세 인 원	시(도) 구(구) 번길 외 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내 역 서

구분 동	과세표준	세율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구·군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시효완성정리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세															
○○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서명		
			직급	성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을)]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울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 략)</p> <p>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p> <p>③ (생 략)</p>	<p>제13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효완성정리</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u>결손처분</u>) 법 제106조에 따른 <u>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u>(갑, 을)에 따른다.</p> <p><신 설></p>	<p>제14조(<u>정리보류 등</u>) ① ----- --- <u>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u> --- ----- <u>정리보류표</u>----- -----.</p> <p>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u>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u> 및 <u>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u>에 따른다.</p>
<p>제15조(<u>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u>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5조(<u>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 ----- <u>정리보류를</u> ----- <u>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부</u>-- <u>정리보류 취소액</u>----- ----- -----.</p>
<p>제16조(<u>결손처분의 사후관리</u>) 결</p>	<p>제16조(<u>정리보류의 사후관리</u>) 정</p>

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
 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채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6항의 인계·인
 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
 른다.

리보류를 한 -----

정리보류를 취소-----
 -----.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91조의11제6항-----

 ----.

관 련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28.]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제목개정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28.]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 28.>